

의안번호	2217988
의 퇴 인	용혜인 의원
회 답 일	2026. 5. 8.
추계번호	26A185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을 우대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 운용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 1.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해상풍력발전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 2. 정책 금융의 제공 - 3. 해상풍력발전 기술의 개발 - 4. 화력발전 종사 인력의 해상풍력 발전으로의 전환 배치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우대 - 6. 그 밖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지원	의무규정
2	안 제4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은 국가가 확보한 공유지분의 크기에 따르되 구체적인 감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2. 상세 사유

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안 제24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공기관을 우대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정책 금융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때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을 우대할 수 있음(법 제24조제1항 후단)
 - 개정안은 위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4조제2항)
 - 1.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해상풍력발전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 2. 정책 금융의 제공
 - 3. 해상풍력발전 기술의 개발
 - 4. 화력발전 종사 인력의 해상풍력 발전으로의 전환 배치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우대
 - 6. 그 밖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지원
- 다만, 현재 동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시점에서 향후 선정될 사업자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해상풍력 사업자 현황

사업자	사업명	준공연월	2025년 공공지분*(%)
안산시	누에섬	‘09.12	1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월정해상1(실증)	‘12.02	100
	월정해상2(실증)	‘12.05	100
한전 전력연구원	군산1(실증)	‘17.01	100
	군산2(실증)	‘21.12	100
제주도청	행원연안 17호기	‘14.03	100
탐라해상풍력발전	탐라해상	‘17.09	63
영광풍력발전	영광해상	‘18.12	46
한국해상풍력	서남해실증	‘19.10	100
전남TP	전남1(실증)	‘15.02	100
	전남2(실증)	‘16.11	100
	전남3(실증)	‘18.11	100
	전남4(실증)	‘22.03	100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행원연안(실증)	‘23.12	100
제주한림해상풍력	한림해상	‘24.10	56.9
전남개발공사	영광 약수해상	‘25.04	100
전남해상풍력	전남	‘25.05	0

주: *공공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지분을 의미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안 제42조)

- 개정안은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 공유지분의 크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재정소요(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42조제1항)
 - 개정안은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 공유지분의 크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규모가 현행법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규모

보다 작을 경우 추가재정소요(수입 감소)가 발생함

-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다만, 최대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 다만, 현재 동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선정될 사업자의 공유지분 정도, 점용료·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 기준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한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2조 제3항)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